

##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관한조례(안)

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같이 제정한다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·감정인 및 참고인 (이하 "증인등"이라 한다) 에 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비용)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(철도, 선박, 항공 및 자동차)·현지교통비· 숙박료·식비로 한다.

②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조 (비용지급의 예외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충청북도의회 의원
2. 청원인
3. 충청북도의회에 출석, 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속하는 공무원
4.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 직원

제4조 (비용의 지급기준)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「별표 2」 의 제3호를 준용한다.

제5조 (비용 지급일수의 계산)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,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 이 충청북도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 하여 이를 산정한다.

제6조 (비용지급의 제한)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